

# 배출부과금 제도해설 (두번째)

정 혁 진 (환경청법무담당관)

## 차 례

-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.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 | 8. 배출부과금의 환급 및 추정       |
| 6. 부과금 납부통지      | 9. 징수유예와 이의 신청          |
| 7.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| 10. 자진신고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|

### 5. 배출부과금 산정 및 부과

#### 1) 배출부과금산정 기본공식

부과금 = 오염물질 1kg (또는 배출물질 1,000 m<sup>3</sup>) 당 부과 금액 ×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(또는 배출물질량) ×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(또는 악취농도별) 부과계수 × 지역별 부과계수 ×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× 위반회수별 부과계수

#### 2)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(영 제17조의 9 제1항)

가) 산정공식: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배출량 × 배출기간 (조업일수)

나)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(영 별표3)

• 아황산가스: 일일유량 ×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×  $10^{-6} \times \frac{64}{22.4}$  (ppm)

• 불소화합물: 일일유량 × 배출허용기준초

과농도 ×  $10^{-6} \times \frac{19}{22.4}$  (ppm)

• 분진 및 수질분야: 일일유량 ×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×  $10^{-6}$  (분진 mg/Sm<sup>3</sup>, 수질 mg/l)

참고(배출량 수치 끝수의 처리)

○ 일반오염물질(SO<sub>2</sub>, 불소, 분진, 악취, BOD, COD, SS):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

○ 특정유해물질(카드뮴등 10종):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

다) 일일유량 산정방법: 측정유량 × 일일조업시간

• 측정유량단위 폐수: l/min 가스: m<sup>3</sup>/H

• 일일조업시간: 최근 30일간의 1일조업시간 평균치

라) 배출기간

- 자진신고자
  - 개선계획에 명시된 비정상운영 개시 일로부터 개선완료 일
- 무신고자(무허가자 포함)
  -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(알 수 없을 때 오염물질 검체채취일)로부터 개선명령(이전명령·조업정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포함) 이행완료일

마) 배출량 및 배출기간 산정기준 총괄 (별표 참조)

- 3)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(영 별표 2. SO<sub>2</sub>의 경우)
- 배출허용기준 20%미만 초과시: 부과계수 1
  - 배출허용기준 20%이상 100%미만 초과시: 20%초과단위로 0.3씩 누증(1.3~1.9)
  - 배출허용기준 100%이상 400%미만 초과시: 100% 초과단위로 1씩 누증(2.5~4.5)
  - 배출허용기준 400%이상 초과시: 부과계수 9 (중전의 경우 조업정지해당)
- ※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는 높은 수치의 농도기준으로 산정

4)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(영 제17조의 10 제①항)

- 시행년도(1987년) : 2.0736
- 다음년도부터는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함

5) 위반회수별 부과계수(영 제17조의10 제②항· 제③항)

- 2 회계년도를 한 단위로 함.
- 위반회수가 0 이면 100/100, 첫회부터 105/100 곱하여 추가함.
- 위반회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(조업정지, 이전·폐쇄명령포함)을 받은 회수로 함(단, 자진 신고자는 위반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
- 회수의 계산은 분야별(대기·수질등)로 따로 계산함.

6. 부과금 납부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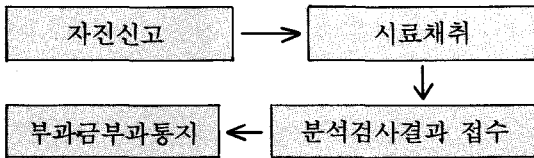
가. 부과권자: 시·도지사

나. 통지서 발급시기

- 자진신고자: 오염물질을 최초로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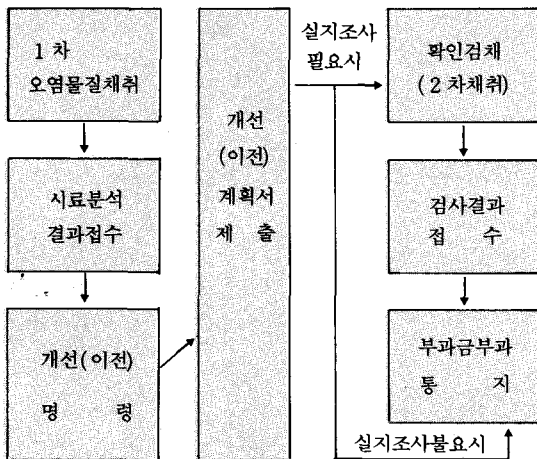
(별표)

구 분		배출농도 및 배출량	배 출 기 간	
			시 점	종 점
자 진 신 고 자		신고에 의한 허용기준 위반확인시	신고서상지정일	신고서상완료일
무 신고 자	추정적용시(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내용 불명시)	개선명령서상(오염물질채취시)	오염물질채취일	개선명령서상(지정일)
	오염물질채취일 ~개선명령일	개선명령서상(오염물질채취시)	오염물질채취일	개선명령일
	개선기간중	개선계획서상(배출농도 및 배출량 변경)	개선명령일	개선완료보고일



○ 무신고자

- 개선(이전)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
  - 오염물질량을 감소시키고자 한 때 :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
  - 오염물질량의 조사·확인이 필요 없을 때 : 개선(이전)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
  - 개선(이전)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: 개선계획서 제출만료일 익일부터 5일 이내(20일)



다. 납부기간 :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

라. 납부통지서 변경통지

- 사유 : 부과금액, 납부기한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시기 : 기발급한 부과통지서상의 납부기한내
- 요령 : 부과통지서 재통지후 기발급한 부과통지서는 회수

7.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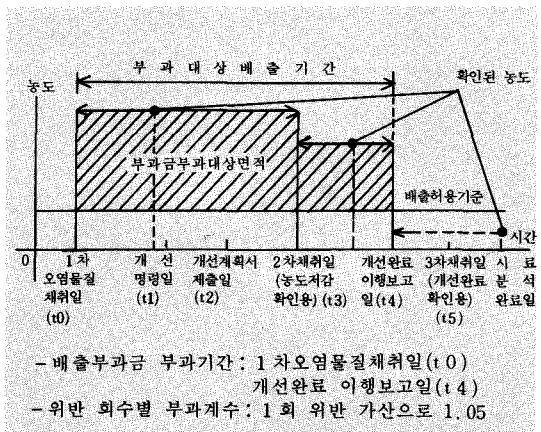
가. 개선 또는 이전명령 이행완료 보고

- 1) 개선 또는 이전명령 기간 만료전의 이행완료 보고
  - 개선 또는 이전명령 기간은 3개월일 경우라도 1개월내에 개선명령시 지정한 개선할 내용이 이행되었거나 또는 공장이전이 실현되었다면 명령이행완료 보고를 할 수 있음.
- 2) 개선 또는 이전명령기간 만료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는 명령 불이행이 되며 이에 대한 제재는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 참조

나. 개선명령 이행상태 확인

- 1) 확인내용
  - 명령서상에 지정된 시설의 설치·개선 대체 등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
  -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 되었는지 여부
- 2) 확인결과의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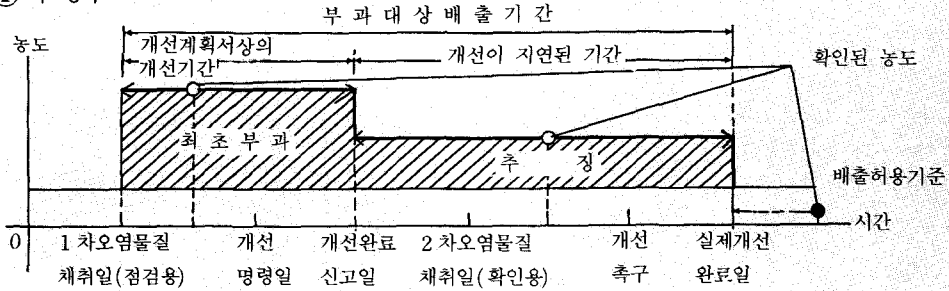
가) 명령서상(무신고자의 경우) 또는 신고서상(자진신고자의 경우)에 지정된 시설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배출농도도 허용기준 이내로 떨어진 경우: 명령 또는 신고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형태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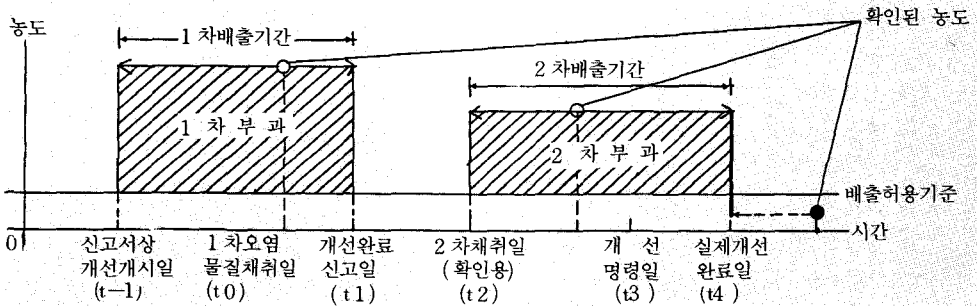
나) 개선완료 신고일 이후 명령서상 (무 신고자의 경우) 또는 신고서상(자진 신고자의 경우)에 지정된 시설의 개

선은 이루어졌으나 농도는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저감되지 않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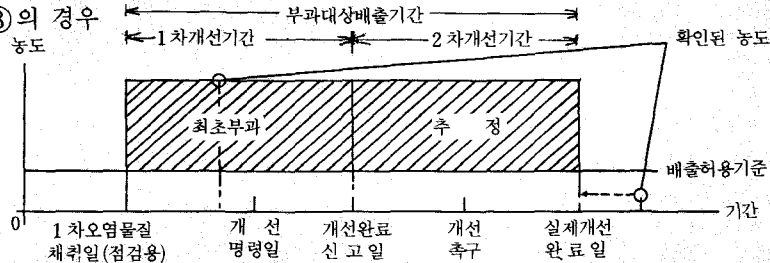
● 나) - ①의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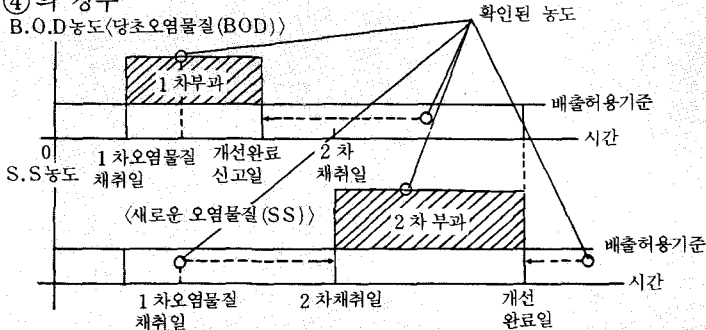
● 나) - ②의 경우



● 나) - ③의 경우



● 나) - ④의 경우



- ① 무신고자의 경우(표 참조)
  - 이 경우는 다시 개선명령을 아니 하고 개선공사 상황을 판단하여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촉구하고 배출부과금은 개선완료 신고일 익일부터 실제 개선완료 예정일까지 추가분을 추징함.
  - 위반회수는 1회이며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1.05적용
- ② 자진 신고자의 경우(표 참조)
  - 이 경우는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에 의거한 2 차 부과금 부과
  - 배출부과금 부과기간
    - 1 차부과: 신고서상 개선개시일부터 개선완료신고일(t-1~t1)
    - 2 차부과: 이행확인일부터 실제 개선완료일(t2~t4)
  - 위반 회수별 부과계수
    - 1 차부과: 1.00 (위반회수0)
    - 2 차부과: 1.05 (위반회수1회)
- ③ 명령서상에 지정된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(표 참조)
  - 오염물질 채취없이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촉구하고 추징은 개선완료일 익일부터 실제 개선완료 예정일까지 추가분을 추징함.
  - 오염물질 채취가 없으므로 추징시 적용되는 농도와 배출량은 변동 없음.
- ④ 당초문제된 오염물질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(표 참조)
  - 이 경우는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계획서를 받아 배출부과금을 부과함. 위반회수별 부과계수도 1 회를 추가함.

- 배출부과금 부과기간
  - BOD: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완료 신고일
  - SS : 2 차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
- 위반회수별 부과계수
  - BOD: 1.05 (1 회위반 가산)
  - SS : 1.10 (2 회위반 가산)

### 8. 배출부과금의 환급 및 추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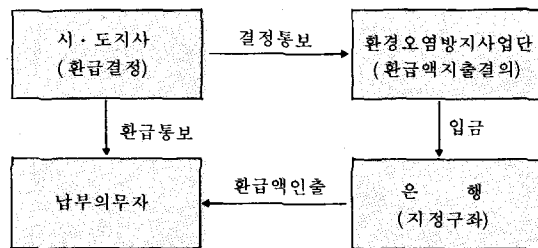
(영 제17조의 13)

#### 가. 환 급

##### 1) 환급사유 발생

- 가) 오염물질 배출기간의 변경 개선(이전) 계획서상의 개선(이전) 완료일이 앞당겨진 때
- 나) 오염물질배출량 및 농도가 감소된 경우 개선(이전) 계획서에 의거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가 감소된 때
- 다) 착오 부과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에 착오가 있는 경우

##### 2) 환급절차



##### 3) 환급기간: 30일 이내

#### 나. 추 징

##### 1) 추가징수 사유발생

- 가)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이 연장된 경우

- 나) 개선기간중 당초부과시 예상했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이 실지 확인결과 변경된 경우
  - 다) 개선완료 보고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
  - 라)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에 착오가 있는 경우: 재산정한 부과금과의 차액
- 2) 추정방법  
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(별지 19호서식)에 의거 납부통지
- 3) 추가통지: 사유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

## 9. 징수유예와 이의신청 (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)

### 가. 징수유예

#### 1) 신청대상

- 재해·도난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 때
-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을 때
-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- 사업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때

#### 2) 신청기간

- 배출부과금 납부기한이 만료되기전: 통지서 발급일 30일 이내
- 체납의 경우 체납기한이 만료되기전: 독촉장 발급일 10일 이내
- 신청기간 경과자는 사유 검토후 결정

#### 3) 처 리
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: 결정통지서 송부

#### 4) 담보제공 요구

징수유예시에는 부과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.

### 나. 이의 신청

#### 1) 신청사유

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적용이 위법 또

는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

#### 2) 신청기간

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#### 3) 처 리

수리여부 결정통지

\* 이의 신청을 하였다하여 배출부과금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음.

## 10. 자진신고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

### 가. 도입배경

○ 고장·수리등 불가피한 비정상가동과 고의성 비정상가동의 확일관리

- 시설결함 또는 고장: 38%

- 관리상 결함(업주의 고의 또는 무관심 및 배출시설관리인 태만등): 62%

#### ① 자진신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

- 행정력 낭비(적발위주의 행정)

- 고의성 비정상가동자의 부과금제도 악용 초래(배출부과금과 방지시설운영비의 비교 측면에서)

#### ② 고의성 비정상 가동자 제재곤란

- 고의성 비정상 가동자는 개선명령 즉시 개선완료 보고(사실상 개선할 것이 없으므로)를 할 수 있으므로 부과금 소액납부

- 자진신고제도가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고의성 비정상가동자에게 허가 취소나 행정벌등 직접규제조항 적용곤란

### 나. 성실신고제도 도입

- 근거: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 5 및 제17조의 9

-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못할 경우 자진신고 길을 터줌으로서

○ 기업의 준법정신 제고

○ 감시·단속을 위한 행정력 절약

○ 고의성 비정상가동자와 불가피한 비정상가동자의 차등관리를 통하여 방지시설의 가동을 향상시키고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

-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조업정지 및 벌칙 적용을 배제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위반 내용면에서(령 제17조의 5,10,13)
  - ① 성실신고제도 도입
  - ② 신고자와 무신고자의 차등관리
- 2) 위반의 빈도면에서(령 제17조의 10)
  - ① 위반회수별 부과계수제도 도입

② 상습적 비정상가동자 차등관리

3) 차등관리 내용 비교

구 분	현 행	개 정		비 고
		신고자	무신고자	
개선명령 대상여부	대 상	비대상	대 상	
검체일로 소급여부	불소급	불소급	소 급	
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적용여부	비적용	비적용	적 용	부과율을 1회 위반시마다 5%씩 누증(2년단위)
직접규제 조항	적 용	배 제	적 용	시설개선을 요하지 않는 비정상 가동자는 반드시 적용

<참고> 자진신고와 무신고의 비교(시행령상의 주요 차이점)

항 목	자 진 신 고	무 신 고
[1] 개선계획서 제출	17조5	17조6
1. 제출원인 2. 개선계획서 내용 3. 오염상태의 추정 적용여부	자 진 신 고 ○배출·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 ○허용기준초과 및 개선예정일 ○가동중단 또는 제한의 내용 ○공법등의 개선에 의한 오염물질 감소 내용 추정적용문제 미발생 (실지조사 필요)	단속결과 개선명령 ○개선 또는 이전기간 ○가동중단 또는 제한의 내용 ○공법 등의 개선에 의한 오염물질 감소 내용  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내용불실의 경우 검체시 오염상태 추정적용(실지조사 배제)
[2] 오염물질채취		
1. 채취목적 2. 채취원인	확 인 용 자진신고(고장 또는 수리)	적 발 용 무신고(고의성 비정상가동 또는 운전 부주의)
[3] 부과금 부과 기산일	신고서상 지정일(17조9 의1)	오염물질 채취일(17조9 의2)
[4]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(105/100)	비적용(17조의10)	적용(17조의10)
[5] 관할기관		
가. 개선계획서 접수 나. 위반여부 확인 다. 행정처분	환경지청장 또는 시·도지사 환경지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시·도지사	시·도지사 " "
[6] 행정제제 및 행정형벌	적용배제 가능	적 용